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33] <신설 2018. 7. 11.>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제53조의3 관련)

1. 최소한 매시 20킬로미터 이하의 주행상태에서 경고음을 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경고음의 크기는 제8호에 따른 전체음 기준 이상일 것
 - 나. 1/3옥타브 대역별 경고음의 크기는 제8호에 따른 1/3옥타브 대역별 기준에 적합한 대역이 2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1개 이상의 대역은 1,600헤르츠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3. 경고음은 전진 주행시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주파수변화 특성을 가져야 한다.
 - 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경고음은 매시 5킬로미터부터 매시 2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속도변화에 따라 평균적으로 매시 1킬로미터 당 0.8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변화할 것
 - 나. 가목을 만족하는 경고음은 제8호에 따른 주파수 범위에 있는 소리로서 적어도 1개 이상이 주파수변화 특성 기준을 만족할 것
4. 전진주행시 발생하는 전체음의 크기는 75데시벨(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운전자가 경고음 발생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경고음발생장치 경고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도 경고음은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경고음발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제8호의 전체음기준을 3데시벨(A) 초과할 경우 제2호나목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최소경고음기준

주파수[Hz]		전진 10km/h [dB(A)]	전진 20km/h [dB(A)]	후진 [dB(A)]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구분5
전체음 ^{주)}		50	56	47
1/3옥타브 대역	160	45	50	해당없음
	200	44	49	
	250	43	48	
	315	44	49	
	400	45	50	
	500	45	50	
	630	46	51	
	800	46	51	
	1,000	46	51	
	1,250	46	51	
	1,600	44	49	
	2,000	42	47	
	2,500	39	44	
	3,150	36	41	
	4,000	34	39	
	5,000	31	36	

주)

"전체음"이란 가청주파수 대역(20 ~ 20,000Hz)의 음압레벨 크기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